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92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김영호 · 강경숙 · 차지호
천하람 · 진성준 · 문정복
김준혁 · 박은정 · 정을호
백승아 · 고민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

제38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생 략)	제4조(차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 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 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 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 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 의 부여에서의 차별</u>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의2(벌칙)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제4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 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 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 치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장</u>